|  |  |  |
| --- | --- | --- |
| **생산안전사고 긴급 대응책 관리방법**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제88호  <생산안전사고 긴급 대응책 관리방법> 개정본이 2016년 4월 15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제13차 국장사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6월7월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양환닝(楊煥寧)  2016년6월3일  제1장 총칙  제1조 생산안전사고 긴급 대응책 관리를 규율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 대응법>,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등 법률과 <돌발사건 긴급 대응책 관리방법>(국반발[2013]101호)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생산안전사고 긴급 대응책(이하 '긴급 대응책'으로 약칭)의 제정, 심사, 비안(備案), 홍보, 교육, 훈련, 연습, 평가, 개정 및 감독관리 업무는 이 방법의 관할을 받는다.  제3조 긴급 대응책 관리는 속지(屬地) 위주, 등급별 책임, 유형별 지도, 종합 조율, 동적 관리의 원칙을 시행한다.  제4조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전국의 긴급 대응책에 대한 종합 조율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縣)급 이상 지방 각 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긴급 대응책에 대한 종합 조율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의 안전생산 감독관리 책임이 있는 각 급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련 업종•분야의 긴급 대응책에 대한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생산경영업체의 주요 책임자는 본 업체의 긴급 대응책의 제정•실시 및 긴급 대응책의 진실성과 실용성에 대해 책임진다. 각 분장 책임자는 직책과 업무분장에 따라 긴급 대응책에 규정한 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생산경영업체의 긴급 대응책은 종합 긴급 대응책, 특별 긴급 대응책 및 현장 처리 방안으로 구분된다.  종합 긴급 대응책이라 함은 생산경영업체가 각 종 생산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한 종합성 업무 방안을 지칭하며, 본 업체가 생산안전사고에 대응함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업무 절차•조치이자 긴급 대응책 체계의 대강이다.  특별 긴급 대응책이라 함은 생산경영업체가 단일 또는 다양한 유형의 생산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또는 중요한 생산시설, 중대한 위험원, 중요한 활동과 관련된 생산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특별 업무 방안을 지칭한다.  현장 처리 방안이라 함은 생산경영업체가 각 종 안전생산사고 유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장소•장치 또는 시설에 대하여 제정한 긴급 대응책 조치를 지칭한다.  제2장 긴급 대응책의 제정  제7조 긴급 대응책의 제정은 사람을 근본으로 하고 법률과 규정을 따르며 실제에 부합되고 실효성을 중요시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응급처리를 핵심으로 하며 응급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응급 절차를 규범화 하며 보장 조치를 세분화 하여야 한다.  제8조 긴급 대응책의 제정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률•법규•규칙 및 표준의 규정.  (2) 본 지역•부서•업체의 안전생산 실제 상황.  (3) 본 지역•부서•업체의 위험성 분석 상황.  (4) 응급 조직 및 인력의 책임과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실시 조치가 있어야 한다.  (5) 응급 능력과 어울리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응급 절차 및 처리 조치가 있어야 한다.  (6) 본 지역•부서•업체의 긴급 대응 업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명확한 응급 보장 조치가 있어야 한다.  (7) 긴급 대응책의 기본 요소를 완비하여야 하며 긴급 대응책 별첨상의 정보가 정확해야 한다.  (8) 긴급 대응책의 내용이 관련 긴급 대응책과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 긴급 대응책을 제정함에 있어 업무팀을 구성하여 본 업체의 관련 책임자가 팀장을 맡고 긴급 대응책과 관련된 기능부서와 업체의 인력 및 현장 처리 경험을 보유한 인력을 참가시켜야 한다.  제10조 긴급 대응책을 제정하기에 앞서 제정업체는 사고위험에 대한 평가와 긴급 대응책 자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고위험 평가란 각 종 사고의 유형 및 특점에 근거하여 잠재적인 위해 요소를 식별하고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결과 및 제2차 결과, 파생 결과를 분석하며 각 종 결과의 피해 정도 및 영향 범위를 평가하여 사고위험에 대한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제안하는 과정을 지칭한다.  응급 자원 조사라 함은 본 지역•업체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응급 자원의 상황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합작구역 내의 응급 자원 상황에 대하여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사고위험 평가 결론과 결부하여 응급조치를 제정하는 과정을 지칭한다.  제11조 지방 각 급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서는 법률•법규•규장 및 동급 인민정부와 직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의 긴급 대응책에 근거하고 업무 실태와 결부하여 상응하는 부서 긴급 대응책을 제정하여야 한다.  부서 긴급 대응책은 본 지역•부서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정보 보고, 급별 반응, 지휘권 인계, 경계•대피 등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12조 생산경영업체는 관련 법률•법규•규장 및 표준에 근거하고 본 업체의 조직 관리 시스템, 생산 규모 및 발생 가능한 사고의 특점과 결부하여 본 업체의 긴급 대응책 체계를 수립하고 상응하는 긴급 대응책을 제정해야 하며 자기구조•상호구조 및 사전 처리 등 특점을 구현해야 한다.  제13조 생산경영업체에 다양한 유형의 리스크가 존재하고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종합 긴급 대응책을 제정해야 한다.  종합 긴급 대응책은 긴급 대응 조직기구 및 그 직책, 긴급 대응책 시스템, 사고위험 설명, 조기 경보 및 정보 보고, 긴급 반응, 보장조치, 긴급 대응책 관리 등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생산경영업체는 단일 또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위험에 대하여 상응하는 특별 긴급 대응책을 제정하거나 특별 긴급 대응책을 종합 긴급 대응책에 편입 시킬 수 있다.  특별 긴급 대응책은 지휘기구 및 그 직책, 처리 절차와 조치 등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생산경영업체는 위험성이 비교적 큰 장소•장치 또는 시설에 대하여 현장 처리 방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현장 처리 방안은 긴급 대응 업무 직책, 긴급 처리 조치 및 주의 사항 등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사고 리스크가 단일하고 위험성이 작은 생산경영업체의 경우 현장 처리 방안만 제정할 수 있다.  제16조 생산경영업체의 긴급 대응책은 상급 비상사태관리기구에 제출하는 보고 내용, 긴급 대응 조직기구 및 담당자 연락처, 긴급대응물자 비축 리스트 등 별첨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별첨 정보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갱신하고 정확성•유효성을 확실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 생산경영업체는 긴급 대응책 제정 시 법률•법규•규장의 규정 또는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관련 긴급구조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18조 생산경영업체가 제정한 각 종 긴급 대응책은 상호 연결되어야 하며 관련 인민정부 및 산하 부서, 긴급구조팀, 연관된 기타 업체의 긴급 대응책과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  제19조 생산경영업체는 긴급 대응책을 제정하는 외에 근무장소, 직종의 특점에 근거하여 간단 명료하고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응급 처리 카드를 제정하여야 한다.  응급 처리 카드에는 중점 직종, 담당자의 응급 처리 절차 및 조치, 관련 연락담당자와 연락처를 기록하여야 하며 종업원이 휴대하기에 편리하여야 한다.  제3장 긴급 대응책의 심사평가, 공표 및 비안(備案)  제20조 지방의 각 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본 부서가 제정한 부서 긴급 대응책을 심사 및 확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소집하여 사회 각 계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 광산•금속제련•건설회사와 가연성•폭발성 물질, 위험화학품 생산•경영업체(저장시설을 갖춤, 아래도 이와 같음) 및 위험화학품의 사용량이 국가에서 규정한 수량에 도달하는 화학공업기업, 불꽃놀이 폭죽 생산•도매업체와 중간 규모 이상의 기타 생산 경영 업체는 자사가 제정한 긴급 대응책을 심사평가하고 서면 심사평가기록을 남겨야 한다.  전 항에 규정한 업체 이외의 다른 생산경영업체들은 자사가 제정한 긴급 대응책에 대하여 논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긴급 대응책 심사팀에는 안전생산 및 비상사태관리 분야의 전문가가 편입되어야 한다.  심사인력이 심사하고자 하는 긴급 대응책을 제정한 생산경영업체와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 긴급 대응책에 대한 심사평가 또는 논증 시 기본 요소의 완전성, 조직 시스템의 합리성, 긴급 대응 처리 절차와 초점, 응급 보장 조치의 실행가능성, 긴급 대응책의 연결성 등 내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24조 생산경영업체의 긴급 대응책이 심사평가 또는 논증을 통과한 후 업체의 주요 책임자가 서명하고 공표하며 지체없이 자사 관련 부서, 직종 및 긴급구조팀에 전달해야 한다.  사고위험이 인근의 기타 업체와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생산경영업체는 인근의 기타 업체와 대중들에게 해당 사고위험의 성격, 영향 범위 및 비상사태 예방 조치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지방 각 급 생산안전감독관리부서의 긴급 대응책은 동급 인민정부에 비안(備案)하고 사본을 직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송달하여야 한다.  안전생산감독관리 직책이 있는 부서의 긴급 대응책의 경우 그 사본을 동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26조 생산경영업체는 긴급 대응책 공표일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등급 구분 및 속지(屬地) 원칙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및 관련 부서에 고지 성격의 비안(備案) 절차를 이행한다.  중앙기업 본부(상장회사)의 긴급 대응책은 안전생산 감독관리 직책이 있는 국무원 주관 부서에 비안(備案)하며 사본을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에 송달한다. 중앙기업 본부(상장회사) 산하 업체의 긴급 대응책은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또는 구(區)를 설치한 시(市)급 인민정부의 안전생산감독관리 직책 담당 부서에 비안(備案)한다.  전 항에 규정한 이외의 비(非) 광산, 금속제련 및 위험화학품 생산•경영•저장업체와 위험화학품의 사용량이 국가에서 규정한 수량에 도달하는 화학공업기업, 불꽃놀이 폭죽 생산•도매업체의 긴급 대응책은 소속관계에 따라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비안(備案)한다. 기타 생산경영업체의 긴급 대응책 비안(備案)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안전생산감독관리 직책 담당 부서가 확정한다.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운영업체의 긴급 대응책은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안(備案)하는 외에 긴급 대응책의 사본을 파이프라인이 경유하는 행정구역의 현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송달하여야 한다.  탄광업체의 긴급 대응책은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안(備案)하는 외에 긴급 대응책의 사본을 소재지 탄광안전감독기구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27조 생산경영업체는 긴급 대응책 비안(備案) 시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긴급 대응책 비안(備案) 신고표;  (2) 긴급 대응책 심사 또는 논증 의견;  (3) 긴급 대응책 원본 및 전자 파일;  (4) 리스크 평가 결과 및 응급 자원 조사 리스트.  제28조 비안(備案)등기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생산감독관리 직책 담당 부서는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긴급 대응책의 완비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자료가 완비된 경우 비안(備案) 처리하고 긴급 대응책 비안(備案) 등기표를 발행한다. 자료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 비안(備案)을 거절하고 보완이 필요한 자료를 일괄적으로 고지한다.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비안(備案)하지도 않고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안(備案)한 것으로 간주한다.  안전생산허가증 적용 대상에 해당되며 이미 긴급 대응책 비안(備案) 절차를 이행한 생산경영업체의 경우 안전생산허가증 신청 시 긴급 대응책 비안(備案) 등기표만 제출하고 긴급 대응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29조 각 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긴급 대응책 비안(備案)등기 기록 시스템을 수립하여 생산경영업체가 긴급 대응책 비안(備案)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지도 및 독촉하여야 한다.  제4장 긴급 대응책의 실시  제30조 각 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각 유형의 생산경영업체는 다양한 방식을 취하여 긴급 대응책에 대한 홍보•교육 활동을 전개하여야 하고 생산안전사고 긴급 대피 지식 및 자기구조•상호구조 지식을 보급하여야 하며 관련 업무 종사자와 사회대중의 안전 의식 및 응급처리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제31조 각 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본 부서 내부 긴급 대응책 교육을 안전생산교육 업무계획에 편입시키고 본 행정구역 내의 중점 생산경영업체에 대한 긴급 대응책 교육 업무를 조직•실시한다.  생산경영업체는 본 업체의 긴급 대응책, 긴급 대응 지식, 자기구조•상호구조 및 위험대피 요령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관계자들로 하여금 긴급 대응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긴급 대응 직책, 응급처리 절차 및 조치를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긴급 대응 교육의 시간, 장소, 내용, 교사, 참가자 및 심사 결과 등 상황은 사실대로 본 업체의 안전생산 교육훈련 기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 각 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정기적으로 긴급 대응책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본 부서, 본 지역의 생산안전 사고에 대한 응급처리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생산경영업체는 본 업체의 긴급 대응책 모의훈련 계획을 제정하여야 하며 본 업체의 사고위험 특점에 근거하여 매년 최소 한차례의 종합적인 긴급 대응책 모의훈련 또는 특정 종목의 긴급 대응책 모의훈련을 조직하여야 하고 반년마다 최소 한차례의 현장처리 방안 모의훈련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34조 긴급 대응책 모의훈련이 끝난 후 긴급 대응책 모의훈련을 조직한 업체는 긴급 대응책 모의훈련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긴급 대응책 모의훈련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제점을 분석하고 긴급 대응책에 대해 개정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긴급 대응책 제정업체는 긴급 대응책 정기 평가 제도를 수립하여 대응책의 초점과 실용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긴급 대응책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  광산•금속제련•건설회사와 가연성•폭발성 물질, 위험화학품 생산•경영•저장업체 및 위험화학품의 사용량이 국가가 규정한 수량에 도달하는 화학공업기업, 불꽃놀이 폭죽 생산•도매업체와 중등 규모 이상의 기타 생산경영업체는 3년을 주기로 긴급 대응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긴급 대응책에 대한 평가는 관련 전문기구 또는 전문가, 긴급구조 실무 경험이 있는 자를 요청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생산기술서비스기구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긴급 대응책을 개정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법률•법규•규장•표준 및 상위 대응책의 관련 규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2) 비상사태 지휘기구 및 그의 직책이 조정된 경우;  (3) 직면한 사고위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4) 중요한 긴급 대응 자원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5) 대응책의 기타 중요 정보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6) 긴급 대응 모의훈련 및 사고 긴급구조 중에 문제가 발견되여 개정이 필요한 경우;  (7) 제정업체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타의 경우.  제37조 긴급 대응책에 대한 개정이 조직•지휘 시스템 및 직책, 응급처리 절차, 주요 처리조치, 긴급대응 반응 등급 등 내용의 변경과 연관된 경우 개정 작업은 이 방법에 규정한 긴급 대응책의 제정 절차를 참조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긴급 대응책의 보고 절차에 따라 재비안(備案) 하여야 한다.  제38조 생산경영업체는 긴급 대응책의 규정에 근거하여 긴급 대응 지휘 시스템, 긴급구조팀, 긴급구조 물자•장비 및 사용기록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긴급구조 물자•장비에 대한 정기 검측 및 유지보수를 실시함으로써 사용하기 적합한 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제39조 생산경영업체는 사고 발생 후 제1시간에 긴급 대응 절차를 가동시키고 관련 역량을 조직하여 구조 작업을 전개하며 규정에 따라 사고의 정보 및 긴급 대응 상황을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와 안전감독관리 책임이 있는 기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생산안전사고 응급처리 및 긴급구조가 끝난 후 사고발생업체는 긴급 대응책의 실시 상황을 총결짖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관리  제41조 각 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와 탄광안전감찰기구는 생산경영업체의 긴급 대응책 업무를 연도 감독•검사계획에 포함시키고 검사의 중점과 표준을 명확히 하며 계획에 따라 엄격히 법을 집행하고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 지방의 각 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매년마다 긴급 대응책 감독관리 업무를 총결짓고 직상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와 생산경영업체는 긴급 대응책 관리업무에서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업체와 개인을 표창하고 장려할 수 있다.  제6장 법률책임  제44조 생산경영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현급 이상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9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5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정돈을 명하고 5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하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인력 및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1만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1) 규정에 따라 긴급 대응책을 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규정에 따라 긴급 대응책 정기 모의훈련을 조직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 생산경영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현급 이상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긴급 대응책의 제정에 앞서 위험성 평가 및 응급 자원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규정에 따라 긴급 대응책에 대한 심사평가 또는 논증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규정에 따라 긴급 대응책 비안(備案)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사고위험이 인근의 업체,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위험의 성격, 영향 범위 및 비상사태 예방 조치를 인근의 업체와 대중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5) 규정에 따라 긴급 대응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 규정에 따라 긴급 대응책을 개정 및 재비안(備案)하지 아니한 경우;  (7) 긴급 대응책에 규정한 긴급구조 물자 및 장비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제7장 부칙  제46조 <생산경영업체 생산안전사고 긴급 대응책 비안(備案) 신고표> 및 <생산경영업체 생산안전사고 긴급 대응책 비안(備案) 등기표>는 국가안전생산긴급구조지휘센터가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47조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안전생산관리부서는 이 방법의 규정에 근거하고 본 지역의 실제 상황과 결부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48조 이 방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生产安全事故应急预案管理办法**  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令第88号  修订后的《生产安全事故应急预案管理办法》已经2016年4月15日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第13次局长办公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6年7月1日起施行。  局长 杨焕宁  2016年6月3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规范生产安全事故应急预案管理工作，迅速有效处置生产安全事故，依据《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等法律和《突发事件应急预案管理办法》(国办发〔2013〕101号)，制定本办法。  第二条 生产安全事故应急预案（以下简称应急预案）的编制、评审、公布、备案、宣传、教育、培训、演练、评估、修订及监督管理工作，适用本办法。  第三条 应急预案的管理实行属地为主、分级负责、分类指导、综合协调、动态管理的原则。  第四条 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负责全国应急预案的综合协调管理工作。  县级以上地方各级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应急预案的综合协调管理工作。县级以上地方各级其他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按照各自的职责负责有关行业、领域应急预案的管理工作。  第五条 生产经营单位主要负责人负责组织编制和实施本单位的应急预案，并对应急预案的真实性和实用性负责；各分管负责人应当按照职责分工落实应急预案规定的职责。  第六条 生产经营单位应急预案分为综合应急预案、专项应急预案和现场处置方案。  综合应急预案，是指生产经营单位为应对各种生产安全事故而制定的综合性工作方案，是本单位应对生产安全事故的总体工作程序、措施和应急预案体系的总纲。  专项应急预案，是指生产经营单位为应对某一种或者多种类型生产安全事故，或者针对重要生产设施、重大危险源、重大活动防止生产安全事故而制定的专项性工作方案。  现场处置方案，是指生产经营单位根据不同生产安全事故类型，针对具体场所、装置或者设施所制定的应急处置措施。  第二章 应急预案的编制  第七条 应急预案的编制应当遵循以人为本、依法依规、符合实际、注重实效的原则，以应急处置为核心，明确应急职责、规范应急程序、细化保障措施。  第八条 应急预案的编制应当符合下列基本要求：  （一）有关法律、法规、规章和标准的规定；  （二）本地区、本部门、本单位的安全生产实际情况；  （三）本地区、本部门、本单位的危险性分析情况；  （四）应急组织和人员的职责分工明确，并有具体的落实措施；  （五）有明确、具体的应急程序和处置措施，并与其应急能力相适应；  （六）有明确的应急保障措施，满足本地区、本部门、本单位的应急工作需要；  （七）应急预案基本要素齐全、完整，应急预案附件提供的信息准确；  （八）应急预案内容与相关应急预案相互衔接。  第九条 编制应急预案应当成立编制工作小组，由本单位有关负责人任组长，吸收与应急预案有关的职能部门和单位的人员，以及有现场处置经验的人员参加。  第十条 编制应急预案前，编制单位应当进行事故风险评估和应急资源调查。  事故风险评估，是指针对不同事故种类及特点，识别存在的危险危害因素，分析事故可能产生的直接后果以及次生、衍生后果，评估各种后果的危害程度和影响范围，提出防范和控制事故风险措施的过程。  应急资源调查，是指全面调查本地区、本单位第一时间可以调用的应急资源状况和合作区域内可以请求援助的应急资源状况，并结合事故风险评估结论制定应急措施的过程。  第十一条 地方各级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根据法律、法规、规章和同级人民政府以及上一级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的应急预案，结合工作实际，组织编制相应的部门应急预案。  部门应急预案应当根据本地区、本部门的实际情况，明确信息报告、响应分级、指挥权移交、警戒疏散等内容。  第十二条 生产经营单位应当根据有关法律、法规、规章和相关标准，结合本单位组织管理体系、生产规模和可能发生的事故特点，确立本单位的应急预案体系，编制相应的应急预案，并体现自救互救和先期处置等特点。  第十三条 生产经营单位风险种类多、可能发生多种类型事故的，应当组织编制综合应急预案。  综合应急预案应当规定应急组织机构及其职责、应急预案体系、事故风险描述、预警及信息报告、应急响应、保障措施、应急预案管理等内容。  第十四条 对于某一种或者多种类型的事故风险，生产经营单位可以编制相应的专项应急预案，或将专项应急预案并入综合应急预案。  专项应急预案应当规定应急指挥机构与职责、处置程序和措施等内容。  第十五条 对于危险性较大的场所、装置或者设施，生产经营单位应当编制现场处置方案。  现场处置方案应当规定应急工作职责、应急处置措施和注意事项等内容。  事故风险单一、危险性小的生产经营单位，可以只编制现场处置方案。  第十六条 生产经营单位应急预案应当包括向上级应急管理机构报告的内容、应急组织机构和人员的联系方式、应急物资储备清单等附件信息。附件信息发生变化时，应当及时更新，确保准确有效。  第十七条 生产经营单位组织应急预案编制过程中，应当根据法律、法规、规章的规定或者实际需要，征求相关应急救援队伍、公民、法人或其他组织的意见。  第十八条 生产经营单位编制的各类应急预案之间应当相互衔接，并与相关人民政府及其部门、应急救援队伍和涉及的其他单位的应急预案相衔接。  第十九条 生产经营单位应当在编制应急预案的基础上，针对工作场所、岗位的特点，编制简明、实用、有效的应急处置卡。  应急处置卡应当规定重点岗位、人员的应急处置程序和措施，以及相关联络人员和联系方式，便于从业人员携带。  第三章 应急预案的评审、公布和备案  第二十条 地方各级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组织有关专家对本部门编制的部门应急预案进行审定；必要时，可以召开听证会，听取社会有关方面的意见。  第二十一条 矿山、金属冶炼、建筑施工企业和易燃易爆物品、危险化学品的生产、经营（带储存设施的，下同）、储存企业，以及使用危险化学品达到国家规定数量的化工企业、烟花爆竹生产、批发经营企业和中型规模以上的其他生产经营单位，应当对本单位编制的应急预案进行评审，并形成书面评审纪要。  前款规定以外的其他生产经营单位应当对本单位编制的应急预案进行论证。  第二十二条 参加应急预案评审的人员应当包括有关安全生产及应急管理方面的专家。  评审人员与所评审应急预案的生产经营单位有利害关系的，应当回避。  第二十三条 应急预案的评审或者论证应当注重基本要素的完整性、组织体系的合理性、应急处置程序和措施的针对性、应急保障措施的可行性、应急预案的衔接性等内容。  第二十四条 生产经营单位的应急预案经评审或者论证后，由本单位主要负责人签署公布，并及时发放到本单位有关部门、岗位和相关应急救援队伍。  事故风险可能影响周边其他单位、人员的，生产经营单位应当将有关事故风险的性质、影响范围和应急防范措施告知周边的其他单位和人员。  第二十五条 地方各级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的应急预案，应当报同级人民政府备案，并抄送上一级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  其他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的应急预案，应当抄送同级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  第二十六条 生产经营单位应当在应急预案公布之日起20个工作日内，按照分级属地原则，向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有关部门进行告知性备案。  中央企业总部（上市公司）的应急预案，报国务院主管的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备案，并抄送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其所属单位的应急预案报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或者设区的市级人民政府主管的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备案，并抄送同级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  前款规定以外的非煤矿山、金属冶炼和危险化学品生产、经营、储存企业，以及使用危险化学品达到国家规定数量的化工企业、烟花爆竹生产、批发经营企业的应急预案，按照隶属关系报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备案；其他生产经营单位应急预案的备案，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确定。  油气输送管道运营单位的应急预案，除按照本条第一款、第二款的规定备案外，还应当抄送所跨行政区域的县级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  煤矿企业的应急预案除按照本条第一款、第二款的规定备案外，还应当抄送所在地的煤矿安全监察机构。  第二十七条 生产经营单位申报应急预案备案，应当提交下列材料：  （一）应急预案备案申报表；  （二）应急预案评审或者论证意见；  （三）应急预案文本及电子文档；  （四）风险评估结果和应急资源调查清单。  第二十八条 受理备案登记的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应当在5个工作日内对应急预案材料进行核对，材料齐全的，应当予以备案并出具应急预案备案登记表；材料不齐全的，不予备案并一次性告知需要补齐的材料。逾期不予备案又不说明理由的，视为已经备案。  对于实行安全生产许可的生产经营单位，已经进行应急预案备案的，在申请安全生产许可证时，可以不提供相应的应急预案，仅提供应急预案备案登记表。  第二十九条 各级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建立应急预案备案登记建档制度，指导、督促生产经营单位做好应急预案的备案登记工作。  第四章 应急预案的实施  第三十条 各级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各类生产经营单位应当采取多种形式开展应急预案的宣传教育，普及生产安全事故避险、自救和互救知识，提高从业人员和社会公众的安全意识与应急处置技能。  第三十一条 各级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将本部门应急预案的培训纳入安全生产培训工作计划，并组织实施本行政区域内重点生产经营单位的应急预案培训工作。  生产经营单位应当组织开展本单位的应急预案、应急知识、自救互救和避险逃生技能的培训活动，使有关人员了解应急预案内容，熟悉应急职责、应急处置程序和措施。  应急培训的时间、地点、内容、师资、参加人员和考核结果等情况应当如实记入本单位的安全生产教育和培训档案。  第三十二条 各级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定期组织应急预案演练，提高本部门、本地区生产安全事故应急处置能力。  第三十三条 生产经营单位应当制定本单位的应急预案演练计划，根据本单位的事故风险特点，每年至少组织一次综合应急预案演练或者专项应急预案演练，每半年至少组织一次现场处置方案演练。  第三十四条 应急预案演练结束后，应急预案演练组织单位应当对应急预案演练效果进行评估，撰写应急预案演练评估报告，分析存在的问题，并对应急预案提出修订意见。  第三十五条 应急预案编制单位应当建立应急预案定期评估制度，对预案内容的针对性和实用性进行分析，并对应急预案是否需要修订作出结论。  矿山、金属冶炼、建筑施工企业和易燃易爆物品、危险化学品等危险物品的生产、经营、储存企业、使用危险化学品达到国家规定数量的化工企业、烟花爆竹生产、批发经营企业和中型规模以上的其他生产经营单位，应当每三年进行一次应急预案评估。  应急预案评估可以邀请相关专业机构或者有关专家、有实际应急救援工作经验的人员参加，必要时可以委托安全生产技术服务机构实施。  第三十六条 有下列情形之一的，应急预案应当及时修订并归档：  （一）依据的法律、法规、规章、标准及上位预案中的有关规定发生重大变化的；  （二）应急指挥机构及其职责发生调整的；  （三）面临的事故风险发生重大变化的；  （四）重要应急资源发生重大变化的；  （五）预案中的其他重要信息发生变化的；  （六）在应急演练和事故应急救援中发现问题需要修订的；  （七）编制单位认为应当修订的其他情况。  第三十七条 应急预案修订涉及组织指挥体系与职责、应急处置程序、主要处置措施、应急响应分级等内容变更的，修订工作应当参照本办法规定的应急预案编制程序进行，并按照有关应急预案报备程序重新备案。  第三十八条 生产经营单位应当按照应急预案的规定，落实应急指挥体系、应急救援队伍、应急物资及装备，建立应急物资、装备配备及其使用档案，并对应急物资、装备进行定期检测和维护，使其处于适用状态。  第三十九条 生产经营单位发生事故时，应当第一时间启动应急响应，组织有关力量进行救援，并按照规定将事故信息及应急响应启动情况报告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其他负有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  第四十条 生产安全事故应急处置和应急救援结束后，事故发生单位应当对应急预案实施情况进行总结评估。  第五章 监督管理  第四十一条 各级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煤矿安全监察机构应当将生产经营单位应急预案工作纳入年度监督检查计划，明确检查的重点内容和标准，并严格按照计划开展执法检查。  第四十二条 地方各级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每年对应急预案的监督管理工作情况进行总结，并报上一级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  第四十三条 对于在应急预案管理工作中做出显著成绩的单位和人员，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生产经营单位可以给予表彰和奖励。  第六章 法律责任  第四十四条 生产经营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第九十四条的规定，责令限期改正，可以处5万元以下罚款；逾期未改正的，责令停产停业整顿，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1万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  （一）未按照规定编制应急预案的；  （二）未按照规定定期组织应急预案演练的。  第四十五条 生产经营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可以处1万元以上3万元以下罚款：  （一）在应急预案编制前未按照规定开展风险评估和应急资源调查的；  （二）未按照规定开展应急预案评审或者论证的；  （三）未按照规定进行应急预案备案的；  （四）事故风险可能影响周边单位、人员的，未将事故风险的性质、影响范围和应急防范措施告知周边单位和人员的；  （五）未按照规定开展应急预案评估的；  （六）未按照规定进行应急预案修订并重新备案的；  （七）未落实应急预案规定的应急物资及装备的。  第七章 附 则  第四十六条 《生产经营单位生产安全事故应急预案备案申报表》和《生产经营单位生产安全事故应急预案备案登记表》由国家安全生产应急救援指挥中心统一制定。  第四十七条 各省、自治区、直辖市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可以依据本办法的规定，结合本地区实际制定实施细则。  第四十八条 本办法自2016年7月1日起施行。 |